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6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박수영의원안)	3

I.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0. 23.
- (3) 회 부 일 : 2024. 10.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박수영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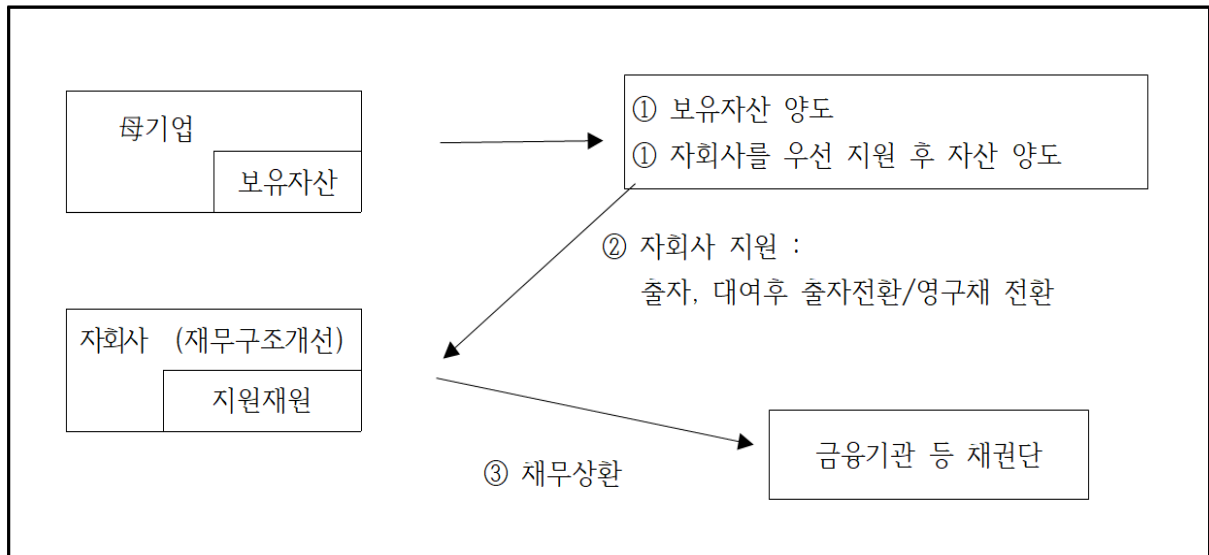
현 행	개정안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 ○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제1항) - 적용기한: 2026. 12. 31. - 사후관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익금에 산입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신 설>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 ○ (현행과 같음) ○ <u>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 시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u> - <u>적용대상</u> ① <u>출자법인이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대여 후 출자전환 또는 영구채 전환의 방법으로 이 전하는 경우</u> ② <u>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우선 자금을 차입하여 이전한 후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대금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u> - <u>사후관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u>

현 행	개정안
	<u>산입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박수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의안번호 4864)

- 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지원방식 개관]



- 법 제34조에 따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¹⁾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특례임.

동 과세특례의 취지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①내국법인이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함.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할 때, 출자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출자법인의 채무구조개선을 위한 출자법인의 지원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1) 채무구조개선계획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 중소기업 등과 체결한 약정을 의미함.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이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해당 기업이 아닌 모기업(출자법인) 등에게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채무상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될 수 있음.

출자법인이 가용재원이 없어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보유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자회사에 지원할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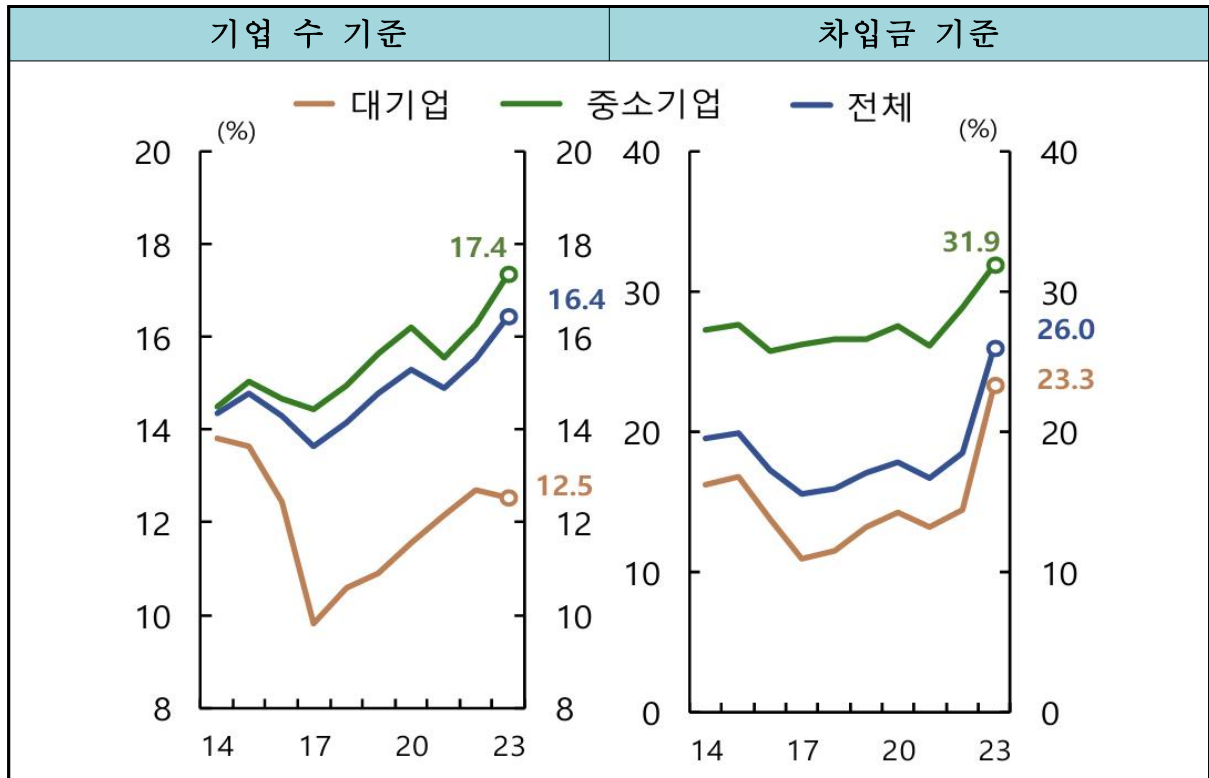
개정안에 따라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위와 같은 부담이 완화되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자법인의 지원을 통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여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2023년 말 기준 전체 외감기업에서 한계기업²⁾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하는 등 한계기업의 비중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2)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 기업을 의미함.

[연도별 한계기업 비중]



주) 각 연도별 분석대상 외감기업 수 및 기업 보유 차입금 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채무상환을 위한 한계기업의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하여 대량 실업과 가계부실 및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한계기업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법인의 지원을 장려하여 한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업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는 피출자법인을 지원할 여유자금이 충분한 출자법인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동 과세특례가 도입되면 출자법인이 자산매각 없이 피출자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피출자법인 지원과 관계없이 당초 매각 의사가 있었던 자산을 매각하고 피출자법인을 지원하면서 세부담을 줄이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출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출자법인이 자산양도를 통해 피출자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써,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세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 제40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한 주주에게는 증여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만약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하였다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³⁾

셋째, 개정안과 같이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에 따라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그러나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이미 자산을 매각하여 피출자법인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출자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한되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 상황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황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황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부칙 관련 수정의견]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u>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제2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u>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u>

문 의 처

02)6788-5155